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451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인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행정·운영 비용의 현실화를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합계	75,000원	95,000원(+20,000원)
1차	30,000원	40,000원(+10,000원)
2·3차	45,000원	55,000원(+10,000원)

3. 적용 시기

2026년도에 시행되는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부터 적용